

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일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9-82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8.12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사라져가는 어촌문화 자원을 복원·계승하기 위한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일부 공유재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등을 전시·판매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,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도래하여 3년간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(무상)하여 안산 별망어촌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.

법적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3조, 제17조
-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12조
※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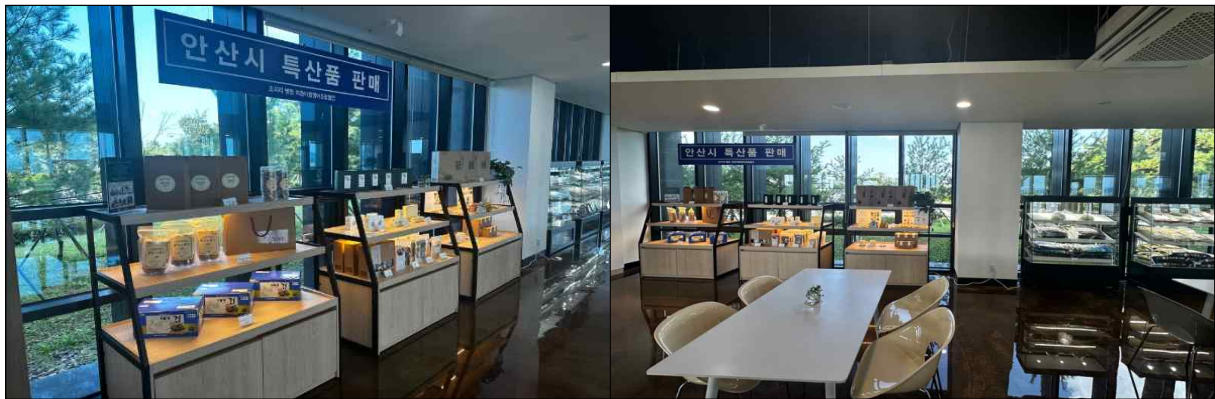
주요내용

- 개 요
 - 대 상 지 : 단원구 시화호수로 553(성곡동 827번지)
 - 사용면적 : 411.17㎡ (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일부)
 - 사 용 인 : 초지리 별망어촌마을 영어조합법인
 - 무상(면제) 사용기간 : 2025. 10. 13. ~ 2028. 10. 12. (3년)
 - 사용료 감면액 : 32,100천원/년
 - 시설규모 : 2층(건축면적 596.52㎡, 연면적 993.38㎡)
 - 계약방법 : 수의계약(「공유재산법」 제20조제2항제1호)

○ 위치도



○ 현장사진



○ 사전절차 이행사항

-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(갱신) 검토보고 : 2025. 07. 15.
-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(원안가결) : 2025. 07. 23.

○ 향후 일정

-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갱신 및 관리 운영 : 2025. 10. ~

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【붙임 2】

방침결정문 : 【붙임 3】